

제 1호

KU-GSIS
Policy Brief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강 문 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18. 4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강 문 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mkang@korea.ac.kr>

1. 한미 FTA 추진과정과 발효 6주년의 효과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은 출범 이후 축산업, 서비스 등의 일부 부분에서 생산자 후생 하락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미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한미 FTA 추진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03.08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징
2005.02~04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3차례 개최(서울, 워싱턴 DC)
2006.02	- 한미 FTA 추진 발표: 본부장-USTR대표 공동 기자회견 (미 의사당, 워싱턴 DC)
2006.06	-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DC)
2007.04	- 한미 FTA 협상 타결
2010.11~12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2011.10	- 미국 상원/하원 본 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1	- 한국 국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2012.03	- 한미 FTA 발효
2017.08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1차 특별회기 개최(서울)
2017.10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제2차 특별회기 개최(워싱턴 DC)
2018.01	-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 DC)
2018.02	-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서울)
2018.03	-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 DC)
2018.03.26	-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자료: 자유무역협정 공식 웹사이트(<http://www.fta.go.kr>)에서 정리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는 양국간 동맹관계의 지속 및 강화라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FTA는 2018년 3월까지

세 차례의 개정협상을 통해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참여정부시절 마련된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 과제로 선정된 이후 2005년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거쳐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었다. 양국 정부는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조치,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장벽, 자동차, 의약품, 투자,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등 총 20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2007년 4월까지 총 8차례 협상을 하였고, 2010년 자동차, 축산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2011년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및 이행법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는 발효되었다.

올해로 발효 6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2016년 5년 동안 전세계 무역이 연평균 2.0% 감소하고 한국의 대세계 무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데 반해, 한미 양국간 무역은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 또한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2.57%에서 2016년 3.19%로 0.6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동 기간 8.50%에서 10.64%로 2.14%포인트 증가하였다.²⁾

그러나 양국간 무역수지의 경우 상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흑자가 2011년 116.4억 달러에서 2016년 232.5억 달러로 116.1억 달러 증가하여 거의 2배 증가한 반면,³⁾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적자가 2011년 109.7억 달러에서 2016년 142.8억 달러로 33.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⁴⁾ 이는 한미 FTA 발효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이 상품무역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서비스 경쟁력이 높은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 한국의 대미수출의 경우 승용차(2016년 비중: 23.3%), 자동차 부품(10.2%), 무선 전화기(9.7%) 등이 주력 수출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품목(MTI 4단위 기준, 2016년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은 개별소자 반도체(50.6%), 보조기억장치(28.5%), 승용차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7호.

2) 전게서.

3)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2017년 11월 15일).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접속일: 2017년 11월 15일).

(12.4%), 자동차 부품(6.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⁵⁾ 품목별 한국의 대미수입의 경우 집적회로 반도체(2016년 비중: 8.1%), 항공기 부품(5.6%), 반도체 제조용 장비(4.8%) 등이 주요 수입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품목(MTI 4단위 기준, 2016년 대미수입 상위 10대 품목 중)은 LPG(321.9%), 승용차(37.1%), 의약품(12.9%), 항공기 부품(1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⁶⁾

이에 반해 농축산물의 대미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83.4억 달러와 비교하여 2016년 71.8억 달러로 오히려 11.6억 달러 감소하였는데,⁷⁾ 한미 FTA로 인한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4~16년 발효된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 뉴질랜드(2015년 12월) 등과 FTA로 인해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가 발생하여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11년 6.5억 달러(12.8만 톤)에 비해 2016년 58.5%가 증가한 10.4억 달러(16.9만 톤)를 기록하였으나, 광우병(BSE) 발생 직전인 2003년 수준 24.9만 톤에 미치지 못한다. 과일류에서는 오렌지(2.1억 달러), 체리(1.1억 달러), 레몬(0.3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이전 평년 수준과 비교할 경우 레몬(305.3%), 체리(267.4%), 포도(153.1%), 자몽(145.4%), 오렌지(91.4%) 등의 수입액이 급증하였다.⁸⁾

서비스 부문별로 한국이 대미 적자를 살펴보면, 2016년 여행수지(57.3억 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45.9억 달러),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30.0억 달러), 운송수지(14.5억 달러) 등의 순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경우 2015년 5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부문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5)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2017년 11월 15일).

6)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tat.kita.net/stat/>; 접속일: 2017년 11월 15일).

7)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 동안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을 활용할 경우 이와 같은 발효 이전 평년 수준이 62.9억 달러이어서 2016년에는 이보다 8.9억 달러 증가한 7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144호.

8) 한미 FTA 발효 이전 평년치는 2007~11년 5년 동안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를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7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출범한 이후 4월 7일 현재 총 75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135건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a), 161건의 선언(Proclamations)을 발표하였다.

[표 2]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행정명령 및 대통령 각서

형태	일시	내용
행정명령	2017.03.31	심각한 무역적자에 대한 종합 보고서 관련 행정명령
	2017.03.31	반덤핑/상계관세, 무역/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명령
	2017.04.18	미국산 구매 및 미국인 고용에 대한 행정명령
	2017.04.25	농업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
	2017.04.28	미국 우선주의 해외외주에 대한 에너지 전략
	2017.04.29	무역/제조업 정책실 설립에 대한 행정명령
	2017.04.29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 관련 행정명령
	2017.07.21	제조업, 국방산업에 대한 평가 및 강화
	2017.09.27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대통령 각서	2017.01.23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철회
	2017.01.24	미국 파이프라인 건설 관련 (국내산 사용 계획 수립)
	2017.01.24	국내 제조업 관련 규제 개혁
	2017.06.21	북한 관련 지속적인 국가위기에 대한 메시지
	2017.08.14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정책방향, 조사 권한 등
	2018.03.08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정
	2018.03.22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조정; 301조 조사
선언	2017.05.21	세계무역주간(World Trade Week), 국제무역의 중요성
	2017.06.29	일반특혜관세(GSP) 관세철폐 대상 축소
	2017.07.16~22	미국산(Made in America)의 주간
	2017.07.27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
	2017.10.06	국가제조업의 날(National Manufacturing Day)
	2017.12.22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 관련 조치

자료: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접속일: 2018.04.07.)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301조 조사, 제조업 육성, 무역수지, 반덤핑/상계관세, 무역협정, 북한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철회를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산 구매 (Buy American) 및 미국인 고용 (Hire American)’ 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화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6~22일을 미국산(Made in America) 주간으로 지정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을 구매하도록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부과 등을 대통령 각서를 통해 발표하

며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기본 원칙, 세부 목표, 우선과제

5대 기본 원칙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 고용창출 • 교역국과의 상호주의 • 제조업 기반 강화 및 보호 • 농산물 및 서비스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의 노동자 및 기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 • 불공정무역장벽 제거 • 미 경제 모든 부문의 이해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 유지 •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 기존 협정에서의 노동 관련 규정 집행 • 미국의 권익과 혜택을 약화하고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여타 국가(WTO회원국 포함)의 노력 차단 • 변화된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현재의 무역협정을 업데이트 • 국가안보를 유지/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제조업 기반에 기여하는 무역정책 • 국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가장 공정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 노동자/농장/축산업자/서비스공급자/기업 등을 지지
4대 우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정책 관련 국가주권 방어 • 미국 통상법의 강력한 시행 • 시장개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의 활용과 미국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및 집행 • 주요 시장을 가진 국가와의 새롭고 개선된 무역협정(trade deals) 협상 	

자료: USTR (2017, 1-2)

보다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은 USTR(2017)⁹⁾에 나타나 있는데,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교역국과의 상호주의, 제조업 기반 강화 및 보호, 농산물 및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상정책의 5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세부 목표를 설정하

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Washington, DC: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였다.

상기 5대 기본 원칙 아래, USTR(2017)은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의 노동자 및 기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 미 경제 모든 부문의 이해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정책 유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미국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 기존 협정에서의 노동 관련 규정 집행, 미국의 권익과 혜택을 약화하고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여타 국가(WTO회원국 포함)의 노력 차단, 변화된 시장조건을 반영하여 현재의 무역협정을 업데이트, 국가안보를 유지/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제조업 기반에 기여하는 무역정책, 국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가장 공정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 노동자/농장/축산업자/서비스공급자/기업 등을 지지하는 등 총 10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총 4개의 우선과제(priorities)를 선정하였는데, 통상정책 관련 국가주권 방어, 미국 통상법의 강력한 시행, 시장 개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의 활용과 미국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 및 집행, 주요 시장을 가진 국가와의 새롭고 개선된 무역협정(trade deals) 협상 등을 포함하였다.

3.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협상 결과와 평가

가. 개요

지난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FTA 특별회기에서 양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1~3월 총 세 차례 개정협상을 진행하여 3월 26일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지난 1월 5일 개최된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가 제기되었고, 1월 31일과 2월 1일 개최된 제2차 개정협상에서는 상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며¹⁰⁾ 3월 제3차 회의 이후 협상을 타결하였다.¹¹⁾ 본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자동차

10) 산업통상부(2018.2.1.) 보도참고자료,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11) 산업통상부(2018.3.26.)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관심사항은 자동차 분야이었는데, 동 분야는 2006년 협상 개시 이후 수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되어 현재의 합의안에 도달하였다. 관세분야의 경우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승용차의 경우 발효 4년이 지나면 양국 모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현재 양국 모두 무관세인 상태이어서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이를 되돌리는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민감 부문인 픽업트럭의 경우 2021년 철폐 예정이던 현행 관세(25%)에 대해 철폐 유예 기간을 20년 추가 연장되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표 4] 한미 FTA 협상의 자동차 관세 분야 협상 결과

한미 FTA 협상 결과 (2007.04)	한미 FTA 재협상 결과 (2010.12)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2018.03)
- 한국: 현행 관세(8%) 발효 즉시 철폐 - 미국: 3,000cc 이하 차량 현행 관세(2.5%) 발효 즉시 철폐; 3,000cc 이상 차량 현행 관세(2.5%) 발효 3년 후 철폐; 픽업트럭의 경우 현행 관세(25%) 발효 10년 후 철폐	- 한국: 현행 관세(8%) 발효 4년 동안 4% 유지, 그 이후 철폐 - 미국: 현행 관세(2.5%) 발효 4년 동안 유지, 그 이후 철폐; 픽업트럭의 경우 현행 관세(25%) 발효 7년 동안 유지, 그 이후 3년 동안 단계적 철폐(2021년 철폐)	- 한국: 변동 없음 - 미국: 픽업트럭의 현행 관세(25%) 철폐 유예기간을 20년 추가 연장(2041년 철폐)

자료: 저자 정리

또한 관세 분야 외에도 미국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연비 및 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 새로운 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평가: 먼저 관세 분야에서 승용차의 경우 무관세 합의를 철회하고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유예기간

을 20년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픽업트럭의 미국시장진출을 준비하여온 우리 업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개정협상에서 다시 입증되었듯이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분야가 자동차 픽업트럭 분야이어서 농산물 분야가 완전히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상호 이해관계의 절충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연간 제조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통과를 준용하기로 한 합의는 미국 자동차(브랜드 기준)의 연간 수입물량이 20,000대 수준¹²⁾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는 당장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기타 의제

그 외 미국의 관심사항으로 한미 FTA 이행 이슈가 논의되었는데,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우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양국은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항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제소 남발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등에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평가: 한미 FTA 협상과정부터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인식되어 왔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투자자 제소 남발 방지 등이 제기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라. 철강 232조 관세 면제

앞서 [표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난 3월 8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 합의하였다.¹³⁾ 다만, 동 합의는 오는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12) 2017년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 자동차(브랜드 기준)는 총 20,019대(전체 수입 대비 8.6%)이며, 2016년 18,281대(8.1%), 2015년 17,501대(7.2%), 2014년 14,465대(7.4%), 2013년 11,657대(7.4%) 수준임.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s://www.kaida.co.kr>; 접속일: 2018.04.07.)

13) 산업통상부(2018.3.28.)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과 미국 철강 232조 관련, 한

그러나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철강업체가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연간 물량에 제한을 설정하였다.

평가: 먼저 합의된 내용은 25%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는 대신, 연간 수출물량에 쿼터를 설정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5% 고율의 관세부과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협상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연간 수출물량에 쿼터를 설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출자율제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의 형태로 WTO 세이프가드 11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추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4. 전반적인 평가와 시사점

먼저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관련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된 협상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선방한 협상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이 연장된 점이 아쉬운 결과이나, 농산물 분야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픽업트럭분야가 우리의 농산물 분야와 같이 민감 분야(red-line)임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측이 상호 수궁할 점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에서 면제 받는 것을 도출한 결과 역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본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에 연간 수량을 제한한 것은 일종의 수출자율규제(VER)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다자무역체제에서 합의된 무역규범이 훼손되고 국제통상환경이 과거로 회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1981년 미국은 일본 자동차의 급격한 수입을 막기 위해 미일 양자간 협의를 통해 연간 168만대의 수출자율규제(VER)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자율규제는 1980년대까지 강대국이 약소국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와 같은 수출자율규제가 무역자유화에 반하는 조치로 인식되어 기존의 수출자율

미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 발표” .

규제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신규 수출자율규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¹⁴⁾ 따라서 미국 주도 아래 수출자율규제의 부활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중국적으로 훼손하고, 국제통상환경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으로 회귀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어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WTO 제소된 통상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의 통상 관련 정책 및 법안이 수정 또는 폐기된 경우 역시 존재하여 다자무역체제가 미국의 통상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자무역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무역협상(현재 DDA협상)이나 다자무역체제 자체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상 이슈를 안보 문제와 연계하는 미국의 전략은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통상 안보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즉, 미국 통상정책의 안보 문제와의 연계는 결국 ‘신(新)냉전시대의 도래’라는 측면에서 관찰해야 하는데, 20세기의 냉전시대에 비해 새로이 도래할 ‘신냉전시대’는 미·중 양자적 갈등과 대립이라는 큰 틀 속에 동북아 지역이 지정학적 구도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구한말 시대와 20세기의 냉전체제를 겪으면서 지정학적 희생물이 됐던 한반도에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신냉전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안보 등의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과 생존을 동시에 지키고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4) GATT1994 Article XIX, WTO Safeguard Agreement Article 11.